##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3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정춘생·이수진·김재원

김준형・조 국・차규근

이해민 • 황운하 • 김선민

서왕진 · 신장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처럼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또한, 가정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 복귀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복귀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 가정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또는 상담 등의 조치

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 또는 상 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해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 주요내용

- 가.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안 제 7조).
-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 (안 제17조의2 신설).
- 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점 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 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목적이 달성되거나 제16조에 따른 입소기간 이 끝나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

- 원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12조제 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3(피해자의 가정 복귀) ①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는 관할 시·도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가정 복귀가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피 해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 하게 됨에 따라 성폭력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를 말한

다)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 그 성폭력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
- 2. 피해자를 상담 · 치료한 의사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폭력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기관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생 략)	취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
	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
	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
	<u>산할 수 있다.</u>
<u>②</u> 출석일수 산입 등 <u>제1항</u> 에	③제1항 및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③</u> · <u>④</u> (생 략)	$\underline{4} \cdot \underline{5}$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
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용 지원) ①
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	
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	
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 1. ~ 3. (현행과 같음)
-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보호시설
   을 퇴소한 경우에 한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목적이 달성되거나 제16조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 제12조 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

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및 관리 지원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 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 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 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 한 피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피해자의 가정 복귀)
①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보호자(가해 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는 관할 시·도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신 설>

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 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가정 복귀가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피해자 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 하게 됨에 따라 성폭력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 를 말한다)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 그 성폭력행위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 2. 피해자를 상담·치료한 의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 여 제1항에 따라 가정으로 복 귀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폭력의 재발이 의심되 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기관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 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 자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취 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 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할 수 있다.